

# 『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도개면 신곡리 시유림 산100-1 ⇔ 구평동 사유림 산91-30  
<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>

- 상기 임야(구평동 산91-30)는 천생산성 산림욕장과 연접한 임야로서 최근 급증하는 산림욕장 이용객들의 수용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
- 시유림(신곡리 산100-1)과 교환, 향후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임야 확보 및 시유임야 집단화를 통한 시유지 재산 가치 상승효과 기대

### 3. 주요내용

#### [교환대상]

- 취득재산 : 1필지, 45,967m<sup>2</sup>
  - 소 재 지 : 구미시 구평동 산91-30
  - 예정가격 : 126,409천원(감정가)
- 처분재산 : 1필지, 166,116m<sup>2</sup>
  - 소 재 지 :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100-1
  - 예정가격 : 116,281천원(감정가)

#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제44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임야를 확보코자 시유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시유림인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 100-1번지 166,116㎡(감정가 116,281천원)를 처분하고, 사유림인 구미시 구평동 산 91-30번지 45,967㎡를(감정가 126,409천원)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건은 최근 이용객의 증가로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임야 교환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
- 교환 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